

서 면 답 변 서

- 질의 의원 : 김정태 의원
- 답변공무원 : 농업정책과장
- 질의 요지 : 축협 가입 조건

□ 답변내용

- 농업정책과장 김현태입니다.
- 김정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
축협 가입조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.
- 축협조합원의 자격요건은
 1.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
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
 2. 농업·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
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안에
두고 축산업을 경영하는 법인
(※ 다른 지역축협의 중복가입 금지)
조합원은 2개 이상의 지역축협의 조합원으로 가입 불가
- 축협조합원의 자격범위는

1. 다음 기준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

가축의 종류	사육기준(마리 이상)	가축의 종류	사육기준(마리 이상)
소	2마리	산란계	500마리
작유우	1마리	오리	200마리
돼지	10마리	꿀벌	10군
양	20마리	염소	20마리
사슴	5마리	개	20마리
토끼	100마리	메추리	1,000마리
육계	1,000마리	말	2마리

*비고 :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를 제외한다.

2.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.

가축의 종류	사육기준(마리 이상)	가축의 종류	사육기준(마리 이상)
노새	2마리	꿩	1,000
당나귀	2마리	오소리	20
거위	200마리	뉴트리아	100
칠면조	200마리	타조	20

○ 이상으로 김정태 의원님의
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위와 같이 답변합니다.

2019년 11월 26일

농업정책과장 김현태

